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36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가. (신청사) 2021년부터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완료 기간까지 기금 존속 필요
- 나. (연수원) 입지 변경에 따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 존속 필요

## 2. 주요내용

- 가. 본칙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기금 사업의 추진상황과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함 <본칙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별첨 8]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부칙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2]
- 다. 협 의 : 초등교육과, 교육시설안전과,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2) 비용추계서: [별첨 2]
  - 3) 입법예고(2020. 9. 18. ~ 9. 28.) 결과 : 의견없음(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4) 교육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6)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5])
- 7) 학생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6])
- 8)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별첨 7])
- 9) 관련 법규 [별첨 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lt;신 설&gt;</u></p>	<p><u>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첨 2】 비용추계서 및 검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추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청사)** 비용추계를 필요로 하는 기간은 2024년으로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보통교부금, 공유재산 처분대금) 등을 재원으로 함(조례 제3조)
- **(연수원)** 비용추계를 필요로 하는 기간은 2025년으로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공유재산 처분대금) 등을 재원으로 함(조례 제3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년 이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기금 수입계획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보통교부금)		0	0	27,600,000	0	0	0	0	27,600,00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공유재산 처분대금)		53,323,812	12,279,104	11,402,509	56,399,184	0	0	0	133,404,609
	이자수입		798,363	822,585	484,280	526,163	0	0	0	2,631,391
	소계(a)		54,122,175	13,101,689	39,486,789	56,925,347	0	0	0	163,636,000
기금 지출 계획	신청 사	설계비	3,733,061	1,618,020	13,784	13,784	13,784	0	0	5,392,433
		시설비	46,393	2,327,881	31,312,755	31,312,755	41,750,342	0	0	106,750,126
		감리비	492,000	348,148	1,638,764	1,638,764	1,638,765	0	0	5,756,441
		시설부대비	240,110	252,553	200,000	200,000	9,426,137	1,682,200	0	12,001,000
		소계(b)	4,511,564	4,546,602	33,165,303	33,165,303	52,829,028	1,682,200	0	129,900,000
	연 수 원	토지매입비	0	0	0	2,090,000	0	0	0	2,090,000
		설계비	0	0	0	590,000	790,000	0	0	1,380,000
		시설비	0	0	0	0	4,490,000	13,475,000	8,980,000	26,945,000
		감리비	0	0	0	0	288,000	870,000	573,000	1,731,000
		시설부대비	0	0	0	0	0	0	60,000	60,000
		자산취득비	0	0	0	0	0	0	1,510,000	1,510,000
		기타사업비	0	0	0	0	0	0	20,000	20,000
	소계(c)	0	0	0	2,680,000	5,568,000	14,345,000	11,143,000	33,736,000	
합계(신청사, 연수원)		4,511,564	4,546,602	33,165,303	35,845,303	58,397,028	16,027,200	11,143,000	163,636,000	
□ 총 비용(a-b-c)		49,610,611	8,555,087	6,321,486	21,080,044	-58,397,028	-16,027,200	-11,143,00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0년 이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3,323,812	12,279,104	39,002,509	56,399,184	0	0	0	161,004,609
기금운용수익금(이자)	798,363	822,585	484,280	526,163	0	0	0	2,631,391
합계	54,122,175	13,101,689	39,486,789	56,925,347	0	0	0	163,636,000

※ '21년 교육시설안전과 보통교부금(276억) 포함

5. 작성자: 교육재정과 김동환(3999-643)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위 표와 같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검토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추진을 위하여 사업 완료 기간(신청사: 2024년, 연수원: 2025년)까지 기금 존속이 필요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12.31.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를 신설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총 163,636백만원 소요
  - 신청사 : 129,900백만원
  - 연수원 : 33,736백만원

##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 전제 : 소용비용 추계기간은 2025년도이고 소요비용은 공유재산 처분 대금 등을 재원으로 함

### <기금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2021년도 이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 계
보통교부금	0	27,600,000	0	0	0	0	27,600,000
공유재산 처분대금	67,223,864	11,402,509	56,399,184	0	0	0	133,404,609
이자수입	0	484,280	526,163	0	0	0	2,631,391
계	67,223,864	39,486,789	56,925,347	0	0	0	163,636,000

### <기금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2021년도 이전	1차년도 (2021년도)	2차년도 (2022년도)	3차년도 (2023년도)	4차년도 (2024년도)	5차년도 (2025년도)	합 계
신청사	9,058,166	33,165,303	33,165,303	52,829,028	1,682,200	0	129,900,000
연수원	0	0	2,680,000	5,568,000	14,345,000	11,143,000	33,736,000
계	9,058,166	33,165,303	35,845,305	58,397,028	16,027,200	11,143,000	163,636,000

### 3.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2020.12.31.)을 연장(2025.12.31.)하는 조례 개정에 따라 비용 추계 발생
  - 위 표와 같이 총 1,63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기금의 수입은 공유재산 처분대금, 보통교부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별도 추가적인 재원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우리교육청 재정 운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토지 매각(예정)대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된다면 재정 운용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 견 없 음	

【별첨 4】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b>자치법규명</b>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b>평가담당</b>	감사관	행정6급	이지은
<b>입안주관부서</b>	교육재정과	<b>통보일</b>	2020.9.28.
<b>관련조문</b>	<b>검토결과</b>		<b>조치사항</b>
안 제2조의2	<p>- 동 개정안은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안을 마련함</p>		<u>“원안동의”</u>

**【별첨 5】**

<b>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b>				
관리번호	2020A서울교육032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재정과		
	담당자명	김동환	전화번호	02-399-964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신지은	전화번호	02-399-39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0년 09월 2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0년 09월 23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9월 23일</p>				

【별첨 6】

##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b>자치법규명</b>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 일부개정		
<b>담당부서</b>	교육재정과	<b>담당자</b>	성 명 : 김동환 직 급 : 주무관 연락처 : 02-3999-643
<b>평가담당</b>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위원장 정병수	
<b>해당조항</b>	<b>검토결과</b>		<b>검토결과</b>
제2조의2 부칙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b>원안 동의</b> 의견을 제출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단권고
<b>해당조항</b>	<b>참고의견</b>		
	해당 없음		

※ 본 검토의견서를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

# 【별첨 7】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1.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2.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건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존속기한 연장  
나. 주요내용: 존속기한 5년 연장(2025. 12. 31. 까지)

- 붙임 1. 심의안건 1부.  
2. (교육시설안전과)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변경 1부.  
3. (초등교육과)평창 치유회복력지원 연수원 설립 기본 계획 1부. 끝.

## 교육재정과정

★주무관	<b>김동환</b>	재산관리담당사 무관	<b>강준희</b>	교육재정과정	전결 2020.09.14. <b>김경애</b>
------	------------	---------------	------------	--------	---------------------------------

함조자

시행 교육재정과-19772 ( 2020. 9. 14. ) 접수 ( )

우 03178 서울특별시 중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서울특별시교육청) / http://www.sen.go.kr

전화 02-3999-643 /전송 /sen201017@sen.go.kr /비공개(5)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제3회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결과 알림

---

1. 관련: 교육재정과-19772(2020. 9. 14.)
2. 2020년 제3회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 안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증속기한 연장(안)
  - 나. 심의결과: 원안 가결. 끝.

## 예산담당관 <sup>32</sup>

★주무관	김대희	예산운영담당사 무관	오종만	예산담당관	2020. 09. 18. 엄동환
------	-----	---------------	-----	-------	----------------------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8938 ( 2020. 9. 18. ) 접수 교육재정과-20126 ( 2020. 9. 18. )

우 03178 서울특별시 중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서울특별시 / http://www.sen.go.kr  
교육청)

전화 02-3999-330 /전송 /megashine@sen.go.kr /비공개(5)

**【별첨 8】**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 ② (생략)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생략)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영 조례**

부칙 < 제6255호, 2016. 7. 7.>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